

의안번호	2210600
의 퇴 인	박수현 의원
회 답 일	2025. 7. 21.
추 계 번호	25B299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u>5. 낙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낙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u>	의무규정
2	안 제44조의3(낙시여가지구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의2 ¹⁾ 에 따라 낙시여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낙시여가지구 내의 낙시 도구·시기·대상 및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시여가지구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 개정안 제44조의2(낙시여가지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낙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을 낙시여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	• 미대상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에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수립 중이며,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재정소요 없이 기존 예산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 제3차 낙시진흥기본계획('25~'29)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 집행(용역기간 '24.5.~'24.12.)
2	안 제44조의3(낙시여가지구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낙시여가지구에 대한 특례 및 지원(안 제44조의3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낙시여가지구를 지정하고, 현행법 제5조²⁾, 「내수면어업법」 제18조³⁾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⁴⁾에도 불구하고

-
- 2)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낙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낙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낙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낙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낙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 3)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4)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경우
- ④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

고 낚시여가지구 내의 낚시 도구·시기·대상 및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여가지구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낚시여가지구 지정 지역 및 개소,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낚시터업 허가·등록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허가	등록
계	934	555	379	959	568	391	942	564	378	894	528	366	896	531	365
서울	20	—	20	18	—	18	17	—	17	17	—	17	17	—	17
부산	9	4	5	7	2	5	8	3	5	8	3	5	7	2	5
인천	58	26	32	54	27	27	53	26	27	49	20	29	11	6	5
울산	10	2	8	7	2	5	9	2	7	9	2	7	44	20	24
대구	12	6	6	12	6	6	11	5	6	11	6	5	3	—	3
광주	—	—	—	5	—	5	4	—	4	3	—	3	4	1	3
대전	4	—	4	4	1	3	4	1	3	4	1	3	9	2	7
세종	3	—	3	3	—	3	3	—	3	3	—	3	3	—	3
경기	305	162	143	310	152	158	308	153	155	287	141	146	289	138	151
강원	54	24	30	54	24	30	55	24	31	52	23	29	53	23	30
충북	120	88	32	122	88	34	115	85	30	118	86	32	118	85	33
충남	172	145	27	178	153	25	176	147	29	167	142	25	170	142	28
전북	19	2	17	22	2	20	21	1	20	18	3	15	18	3	15
전남	22	18	4	31	25	6	29	27	2	30	21	9	38	35	3
경북	48	15	33	46	15	31	44	17	27	41	11	30	39	10	29
경남	77	62	15	84	69	15	83	71	12	74	66	8	70	61	9
제주	1	1	—	2	2	—	2	2	—	3	3	—	3	3	—